

# 대학직장예비군운영규정

제정 : 2006.06.01  
개정 : 2008.12.18  
개정 : 2011.11.22  
개정 : 2012.06.01  
개정 : 2014.11.01  
개정 : 2020.12.01  
개정 : 2021.12.01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“대원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중대” (이하 “예비군중대” 라 한다)라 한다.  
<개정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21. 12. 01>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의거 직장 방위와 부설된 예비군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0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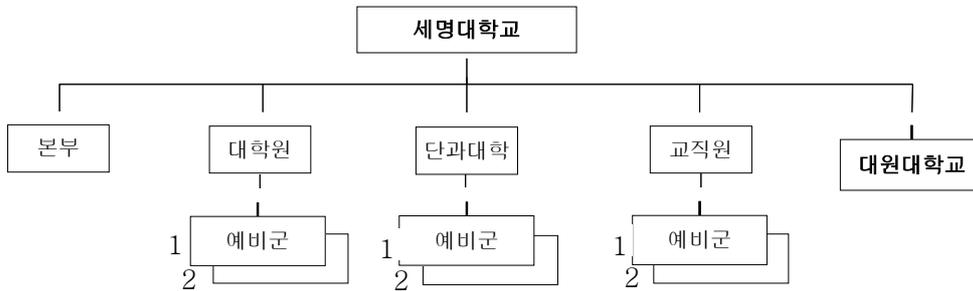
제3조(위치) 예비군중대는 대원대학교 내에 둔다.  
<개정 2008. 12. 17., 2011. 11. 22., 2021. 12. 01>

## 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예비군중대의 지휘 및 관리체제) ① 「예비군법령」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되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예하군부대의 장(이하 “수임군부대장” 이라 칭한다)이 군 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.  
<개정 2020. 12. 01., 2021. 12. 01>

①의2 예비군중대는 수임군부대장의 단편명령(제20-3호 2020. 10. 8. 부)에 의거 세명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(관련규정: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5조(예비군편성) 제6항제2호 및 제3호) <개정 2020. 12. 01., 2021. 12. 01>

② 지휘관계로 예비군중대는 세명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에 예속 운용되며, 그에 따른 편성기구도는 다음과 같다. <신설 2020. 12. 01., 2021. 12. 01>



③ 각 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총장

- 가. 대학직장 예비군중대 편성 및 육성·지원 <개정 2020. 12. 01.>
- 나. 대학직장 방위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
- 다. 예비군 지휘관 임명 요청 <개정 2020. 12. 01.>

2. <삭제 2020. 12. 01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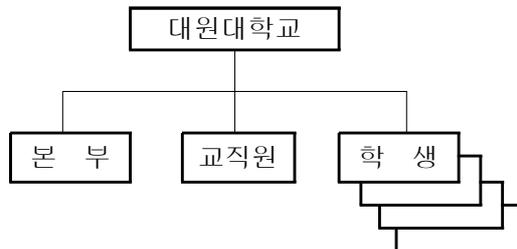
3. 대학직장 예비군 중대장

- 가. 직장 방위와 그 대비 <개정 2020. 12. 01.>
- 나. 소속예비군 지휘 및 운영(동원시) <개정 2020. 12. 01.>
- 다. 예비군 자원관리 <개정 2020. 12. 01.>
- 라. 예비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<신설 2020. 12. 01.>
- 마. 예비군전투장비·물자 관리 <신설 2020. 12. 01., 2021. 12. 01.>

제5조(예비군중대의 편성) ① 편성은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예비군부대 편성인가를 받은 학교의 장(직장장)이 한다. <개정 2020. 12. 01., 2021. 12. 01.>

② 대학에 재직 중인 학생 및 교직원(고용원 포함)으로 예비군편성 대상자 전원과 지원자를 편성대상자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예비군중대의 편제표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

④ 제대별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구분 \ 제대	대대	중대	소대	분대
기준(명)	401	81	41	9
허용범위	401 이상 1600 이하	81 이상 400 이하	41 이상 80 이하	9 이상 40 이하

⑤ 제대별 본부요원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 대	직 책	보 직	인 원	임 명	임 무
대 대	주 임	위관장교로 주임급 직원	1	총 장	편성 및 자원관리 교육훈련행정
	직 원	사무직원	1	총 장	행정, 물자/장비관리
중 대	직 원	사무직원	1	총 장	행정, 물자/장비관리

제6조(지휘관 임명·처우·해임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명상신한 대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수임군부대별 인사명령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①의2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한 임명장을 임명권자를 대리하여 교부하고 보직을 부여한다. 다만,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직장예비군중대장은 공식 발생 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를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. 단, 예비군중대가 세명대학교와 통합되어 예속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단 단편명령(제20-3호 2020. 10.8부)에 의거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예비군중대장 경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수임군부대장에게 임명 요청한다. <개정 2020. 12. 01., 2021. 12. 01.>

③ 분·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자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예비역 전투병과 출신 부사관 및 위관급 <개정 2021. 12. 01.>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: 기타 병과출신 부사관 및 위관급으로 임명하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0조(지휘관 임명) 기준에 준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④ 각 직위별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,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을 포함한다.

⑤ 기타 지휘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「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」 등 관계규정에 준한다. <개정 2012. 06. 01.>

제7조(방위협의회 운영) ①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통합방위법(2013.6.23.개정) <개정 2014. 11. 01.>

2. 통합방위법시행령(2013.8.20.개정) <개정 2014. 11. 01.>

3. 예비군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(2014.1.16.개정)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12. 01.>

② 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위원장 : 총장

2. 위 원 : 처장(또는 과장)급 이상으로 7-10명

3. 간 사 : 예비군 지휘관(예비군 담당주임)

③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정 기 :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

2. 수 시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
④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예비군 육성 및 전력 향상을 위한 지원

가.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양양 <개정 2020. 12. 01.>

나. 예비군의 날, 국군의 날 등 범국민적인 행사 지원(요청시)

다. 예비군의 사기 양양책

ㄱ. 불우 예비군 돕기

ㄴ. 모범 및 우수예비군 포상 <개정 2012. 06. 01.>

2. 교육훈련 지원

가. 급식 및 물자 지원 대책

나. 병력 수송 지원 대책

3. 기타 방위협의회 의장 및 위원이 제출한 안건

⑤ 방위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행정관리) ① 예비군중대는 총원명부, 인사기록표, 직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병적증명서, 신상 카드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전원 발체하여 편성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①의2 대학소속 및 재학 중인 예비군대원 전원을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며 대원이 선택에 따라 지역 또는 소속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지 못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①의3 총장은 예비군 대원의 전출입, 입학, 복학, 휴학 및 졸업시의 인사 발령서를 예비군 중대장에게 필히 통보해야 하며 미 협조로 발생하는 자원누락 또는 지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예비군 대원신고 불이행자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와 행방 불명자는 지체없이 고발한다.

③ 예비군 중대급 이상은 필히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, 업무에 필요한 비치품 및 사무용품을 비치, 활용한다.

제9조(교육훈련) 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별로 교육훈련지침에 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교직원(고용원포함) : 연차별 연간교육훈련지침에 의거 실시 <개정 2021. 12. 01.>

2. 학생예비군 : 방침일부 보류자 적용 <개정 2021. 12. 01.>

②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초빙강사로 위촉활용(위임시)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국방대학원 및 통일연수원 전문요원 <개정 2021. 12. 01.>
2. 교육과학기술부 상설 홍보요원 <개정 2021. 12. 01.>
3. 총력안보 중앙협의회 자문위원 <개정 2021. 12. 01.>
4. 국민정신 교육 연구위원 <개정 2021. 12. 01.>
5. 대학교수 <개정 2021. 12. 01.>
6. 예비역 장성 및 귀순 용사 <개정 2021. 12. 01.>

제10조(지휘관 보직) ① 지휘관의 보직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지휘관 \ 구분	계급	직급	보직	업무담당
대대장	중령 / 소령	3 / 4급	처 / 과장	전담
중대장	소령 / 대위	4 / 5급	과 / 계장	"

② 「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[별표 12]와 같이 부여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### 제3장 재 정

제11조(재정) 예비군중대의 운영 및 훈련에 관한 예산은 교비에서 충당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#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대학직장 예비군운영 지침서 및 예비군 실무편람의 개정시는 이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.
-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직장 예비군 운영지침서와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한다.
-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직장 예비군 운영지침서와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하며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